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승마장과 육성자연휴양림을 함께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이용료를 할인하여 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해 1일 기승 이용료 50퍼센트를 할인하거나 승마 또는 마차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 및 제139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이용자 구분란 중 “마차체험(1인당)”을 “마차체험, 승마체험(1인당)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사용자에게 한한다)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

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

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별표 신규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[별표 2]		[별표 2]		
승마장 시설 이용료(제29조 관련)		승마장 시설 이용료(제29조 관련)		
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 범위	비고	
<u>마차체험</u> <u>(1인당)</u>	성 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
1. ~ 5. 생략 <신 설>				

이용자 구분	이용료 (1명 기준)	이용 범위	비고	
<u>마차체험</u> <u>승마체험</u> <u>(1인당)</u>	성 인 : 5,000원 청소년 : 4,000원 어린이 : 3,000원	승마장 주변		
1. ~ 5. (현행과 같음.) 6. <u>옥성자연휴양림 숙박객(숲속의 집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.</u> <u>가. 1일 기승 이용료의 50% 감면</u> <u>나. 마차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</u> <u>다. 승마체험 이용료의 전액 감면</u>				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1>

② ~ ③ 생략

구미시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승마장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 육성자연휴양림 숙박객에 대하여는 1일 기승 이용료 50% 할인 또는 승마체험 무료 또는 마차 체험무료로 함에 따라 세입의 감수가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자연휴양림 숙박객이 승마장 이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술적으로 추산하는 것이 어려움.

4. 작성자

유통축산과 축산계장 손이석 (☎480-5831)

유통축산과 농업7급 전영기 (☎480-5832)